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3가단551129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 론 종 결 2024. 5. 30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,240,410원 및 그 중48,614,410원에 대하여 2023. 12. 9.부터 2024. 3. 1.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,

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3. 6. 2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2023. 6. 2.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접수 제5390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나. 피고 C :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백상빈

별지